

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5-3548호(2025.12.18.)로 (재)지정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8일

성동



1. 허가구역 (재)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면적 (m ²)	비 고
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	18,749.8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	28,465.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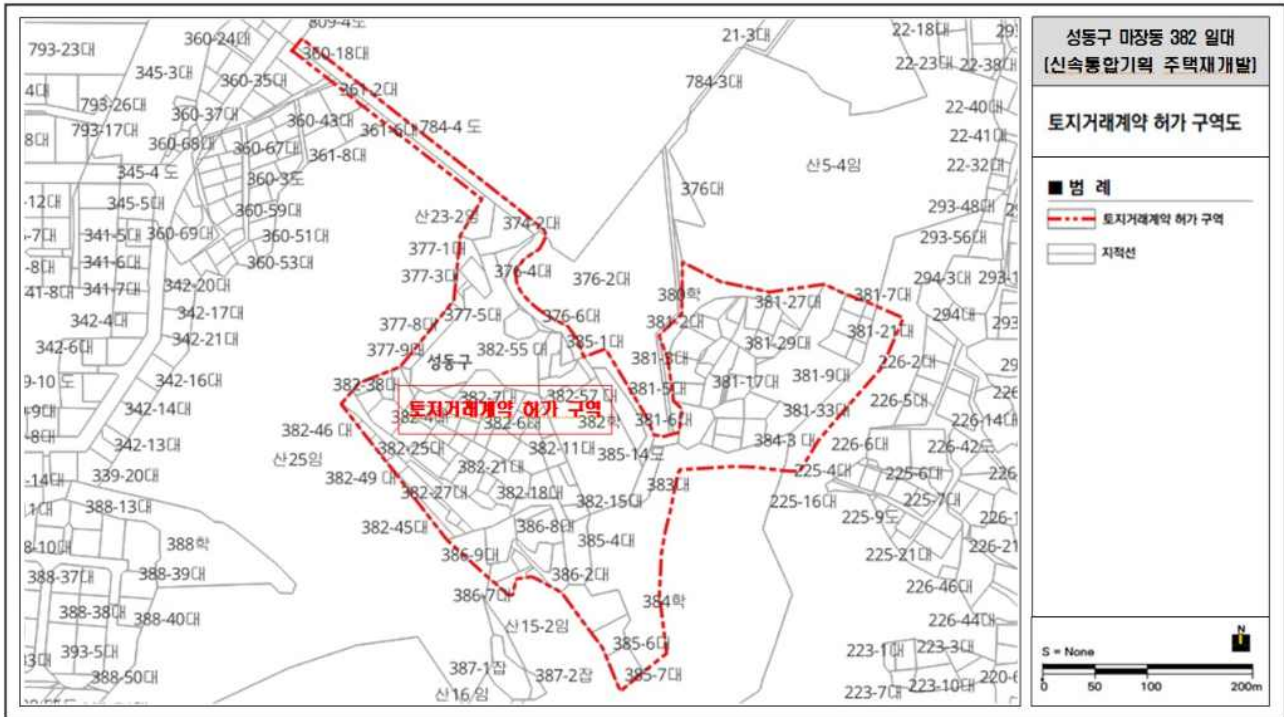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m ² 초과
	상업지역	15m ² 초과
	공업지역	15m ² 초과
	녹지지역	20m ²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m ² 초과

4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

-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



-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

